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0. 5. 8.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7호
----------	------

제출연월일 : 2020. 5. 8.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 나.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1456(2019.10.20.)호와 관련하여 공설시장에 대한 지자체의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내용 규정(안 제40조)
- 나.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내용 규정(안 제41조)
- 다. 농어민직영매장의 신청 자격 내용 규정(안 제42조)
- 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내용 규정(안 제43조)
- 마. 공설시장 공제가입 내용 규정(안 제4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대상아님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20. 3. 3. ~ 3. 23. (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중 제40조를 제45조로 한다.

제8장(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

제4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논산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논산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논산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논산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논산시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3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논산시장은 제20조에 따른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공설시장 공제가입) ① 공설시장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논산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논산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논산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재산(건물)에 대하여는 논산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사회적경제과장	김 민 영
	사회적경제팀장	유 상 선
	담 당 자	이 건 택 (041-746-6013)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u>제8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u></p> <p><u>제4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u></p> <p><u>논산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논산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u></p>
<p><신 설></p>	<p><u>제41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u></p> <p><u>논산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u></p>
<p><신 설></p>	<p><u>제4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신청 자격)</u> <u>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논산시에서 5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논산시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u></p>

<신 설>

제43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논산시장은 제20조에 따른 농어민
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
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를 면
제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공설시장 공제가입) ① 공
설시장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
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논
산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
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
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논
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
하여 논산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
여는 논산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40조 (생 략)

제45조 (현행 제40조와 같음)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다. 재원조달 방안

3. 작성자

사회적경제장 김 민 영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반영



충청남도



수신·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설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무가입 및 가입비 지원 조례 반영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1456(2019.10.20.)호와 관련됩니다.
2. 대구 서문시장('16.11), 서울 제일평화시장('19.9) 등 화재발생으로 화재보험이나 화재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전통시장 피해상인들이 생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3. 중기부에서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 확대를 통한 피해상인들의 조속한 생업복귀·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설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무가입과 지자체의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 지자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간 공설시장에 대한 화재공제 의무가입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기 협조 요청 하였으나 아직 반영실적이 저조한 바, 금년 말까지 미반영 지자체에서는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661(2017.10.11)호; 1914(2018.08.09)호
5. 아울러, 우리 도에서도 2020년도부터 화재공제에 대한 지원을 추진(예정) 중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반영 사항은 향후 전통시장 지원사업 대상선정을 위한 평가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중기부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설시장 의무가입 추진(안) 1부,
 2. 지역별 화재공제 가입현황 1부,
 3. 지역별 화재공제료 지자체 지원현황 1부. 끝.

□ 협조 사항

- 공설시장에 대한 화재공제 가입 의무화(조례 개정) 추진

<공설시장 화재공제 의무가입 표준 조례(안)>

제00조(공제가입)

-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